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5 - 38
------	---------

제출년월일 : 2015.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해촉되는 경우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함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긴급한 경우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다.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 계약을 체결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

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

마.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바.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4조)

-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5. 3. 12. ~ 4. 1. (제출된 의견 없음)
- 2)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권고사항 있음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평가결과 :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장치(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를 권고함
 - 조치사항 : 권고안 반영(제13조 신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서울특별시·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결과가 통보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실시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경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 실시계획서는 경영진단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을 참고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이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영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진단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 또는 진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에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법인에게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

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